

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-402호

「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18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「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행 운영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, 중소기업부 직제 개정사항 및 현행 행정규칙 관리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중소기업부 직제 개정에 따라 협의회 구성 관련 직위 명칭을 향후 직제 개정 시에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
- 나.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설정 기준을 반영하여 새로운 재검토기한을 설정함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8일까지 중소기업부(대변인실 홍보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whs1895@korea.kr
- 2)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중소기업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
- 3) 팩스 : 044-204-7105
- 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<http://www.epople.go.kr>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(전화 : (044) 204 - 710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